海事法研究 第33卷 第2號 別刷

선박충돌사고에 따른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의 구상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임 방 조*

Legal Issues over Recourse Claim of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Fisher Insurance in Collision of Vessels

Bang-Jo Lim

2021. 7.

韓 國 海 事 法 學 會

선박충돌사고에 따른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의 구상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임 방 조*

Legal Issues over Recourse Claim of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Fisher Insurance in Collision of Vessels

Bang-Jo Lim

〈목 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어선보험의 경우
Ⅲ. 어선원보험의 경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1]

DOI : https://doi.org/10.14443/kimlaw.2021.33.2.6

*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 변호사.

1) 상대선의 용선관계 등에 따라 책임주체가 소유자나 용선자로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선박충돌,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구상권,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의 제한, 어업협회, 어선원 임금, 유족 및 상속인의 순위

Abstract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fisher insurance are the government-backing Insurances under Act on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Fishers and Fishing Vessels to protect fishing vessel owners and fishers who need extra protection. When a collision occurs, the fishing vessel owner is compensated by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and the fisher by the fisher insurance,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NFFC") who

---

논문에서는 일괄적으로 '상대선 소유자'라고 표기한다.

is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both insurances makes recourse claim against the counterpart of the collision. In doing so, there arise multiple issues due to unique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fisher insurance and fishing vessel insurance from other insurances.

In a recourse claim for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there are following issues: when the counterpart offsets the NFFC's recourse claim with its own loss of earning damages, it contradicts with collision liability clause of fishing vessel insurance that does not cover the counterpart's loss of earning; the proviso of Article 682 ① of the Commercial Act limits the NFFC's subrogation right due to the assured's remaining loss or damage which is not covered under fishing vessel insurance; loss of earning damage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negotiation through the fisheries associations of both countries when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Korean fishing vessel and Japanese or Chinese fishing vessel.

In a recourse claim for the fisher insurance, there are following issues: standard wage for calculation of the fisher insurance amount differs from the wage for damage claim; statistical wage in damage claim is not sufficient in reflecting fisher's actual wage; the difference between NFFC's disability confirming procedure and disability appraisal by court appointed doctors; the priority order of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under the fisher insurance differs from that of damage claim; ambiguity exists in the order of priority between the recourse claims of the NFFC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ven with the abovementioned multiple issues regarding the fishing vessel insurance, the fisher insurance and recourse claim,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and few court precedents. Therefore, there needs to be thorough researches on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solutions.

〔Key Words〕 Collision of vessels, Fishing vessel insurance, Fisher insurance, Recourse claim, Limitation on subrogation right based on Article 682 ①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Fisheries associations, Fisher's wage, Difference between the priority order of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under the fisher insurance

Ⅰ. 서 론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각 선박은 선체손상 등의 물적 피해와 선원 사상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대향성을 가지는 선박충돌사고의 특성상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범위의 확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돌 당사자들은 각자의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각 보험자는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에 기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선도 예외가 아니어서 충돌사고 선박이 되는 경우 가입되어있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선들과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는다.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상선원은 선원공제 내지 선주상호보험(P&I insurance)으로, (연근해) 어선원은 수협중앙회의 선원종합공제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어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선원법은 재해보상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다만 현행법 기준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2]), 어선소유자가 선원종합공제에 가입하도록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또 가입한다고 해도 공제료 등의 부담으로 월임금을 낮추어 가입하여 충분한 재해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이른바 사회보험,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보험이 시행되었다. 한편 어선 손해에 대하여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를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보험으로 어선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상대선 없는 어선 단독 사고나 어선원 단독 부상 등이 발생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제3자에 대한 구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충돌의 경

2)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우 상대선이 존재하는 이상 어선 및 어선원 보험자는 보험급을 지급한 후 상대선 소유자에 대한 구상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사회보험 내지 정책보험성, 그 보상범위의 한정성, 「어선원재해보험법」 상의 보상범위와 상대선 소유자의 손해배상범위의 관계 등 그 구조의 특수성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을 나누어 구상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Ⅱ. 어선보험의 경우

1. 어선보험 대위규정의 성격

어선보험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으나, 물건보험이자 책임보험이고, 일반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선박보험과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위도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 대위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4조 제2항에서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하여 대위하는 권리의 범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어 있고 보험금 일부 지급시의 보험자 대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보험자인 수협중앙회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가 그 외의 권리를 여전히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논리적으로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를 배제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위에 있어서도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적용과 해석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수협중앙회의 구상청구권과 상대선 소유자의 불가동 손실 배상청구권의 상계 문제

어선보험에서는 선박충돌사고로 발생한 자선(어선)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불가동 손실 역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3] 반면, 상대선이 일반민간보험사의 선박보험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선의 불가동 손실에 대하여는 선박보험 중 불가동 손실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어선의 불가동 손실에 대하여는 충돌배상약관[4]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선소유자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선의 불가동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선의 불가동 손실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즉, 어선이 충돌일방당사선박이고 그 충돌사고로 어선에 불가동 손실이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언제나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와 별도로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해야만 한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어선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상대선 소유자 혹은 그 보험자가 자신의 선체손해와 함께 불가동 손실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법률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상계된 부분 상당액을 임의변제 했음을 이유로 변제자 대위 법리에 따라 다시 어선소유자에게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것이나, 수협중앙회가 이렇게 어선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선소유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에서는 상대선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선박충돌사고로 물적 사고와 함께 인적 사고도 발생한 경우 같은 맥락의 문

---

3) 어선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다른 선박 또는 그 재산의 지연 또는 사용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4) 선박충돌에 따라 상대선에 발생된 물적 손해에 대하여 통상 선체보험에서는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의 합동보험증권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의 충돌배상약관을 통해 전체손해 중 3/4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1/4은 선주배상책임보험(P&I)에서 보상한다.

제가 발생한다. 상대선 소유자와 어선소유자는 부상 혹은 사망한 어선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상대선 소유자가 부상당한 어선원 혹은 사망한 어선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선 소유자는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사이에서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된다. 수협중앙회가 어선보험금을 지급한 후 어선소유자를 대위하여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권 청구를 하면, 상대선 소유자는 위자료 지급으로 취득하게 된 어선소유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가지고 상계 주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상계된 금액만큼을 어선소유자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도 조합원인 어선소유자를 상대로 청구 혹은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5]

3. 보험자 대위권 행사 제한의 문제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라고 하여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 권리가 우선한다고 하여 보험자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어선보험에 있어 어선소유자는 수협중앙회가 평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어선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평가액이 실제 거래에서 평가되는 가치 혹은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어선보험가입에 있어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

---

5) 상대선 소유자가 어선원 혹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취득하는 권리에는 어선원 혹은 유족들이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있는데, 변제에 따른 임의대위에 해당하여 채권양도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문은 상대선 소유자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에서 상대선 소유자 자신이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6)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서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의 일부 지급에는 일부보험의 경우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 전부보험 혹은 보험금이 전부 지급되어도 피보험자의 손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에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양승규, 「보험법」 (제5판)(서울 : 법문사, 2004), 255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서울 : 박영사, 2019), 702면; 박세민, 「보험법」 (제5판)(서울 : 박영사, 2019), 519면 등.

장품 중 일부(대개는 의장품)를 가입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실제거래가치와 수협중앙회 평가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특히 의장품 등 체결단위 중 일부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협중앙회가 어선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어선소유자의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의 제한이 실무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충돌사고를 가정해본다.

A어선의 손해	선체손해 5억원, 기관손해 2억원, 의장품 손해 1억원
어선보험가입금액	선체 5억원, 기관 2억원, 의장품 미가입
B화물선의 손해	선체손해 2천만원, 불가동손실 1억
양 선박 과실비율	A어선 60%, B화물선 40%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어선소유자에게 선체에 대한 어선보험금(5억원) 및 기관에 대한 어선보험금(2억원)을 지급하고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어선소유자도 상대선 소유자에게 자신이 어선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의장품 손해(1억원)의 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상대선 소유자가 어선 선체, 기관 및 의장품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3억 2천만원[= (5억원 + 2억원 + 1억원) × 40%]으로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액(7억원)과 어선소유자의 의장품 손해배상청구액(1억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양 채권에 어떻게 충당 혹은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상 ① 「상법」 제682조 본문에 따라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절대설(보험자 우선설이라고도 함), ② 「상법」 제68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각자의 분배비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상대설(청구권 비례설이라고도 함), ③ 피보험자가 우선적으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는 차액설의 대립이 있다.[7]

7) 보험자 우선설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와 보험자 중 누구로부터 먼저 손해전보를 받는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청구권 비례설은 문언과 배치되고 피보험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장덕조, 「보험법」 (서울 : 법문사, 2011), 250-251면 등.

차액설이 통설적인 입장이다.[8]

대법원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험자 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차액설의 입장에 있다고 이해된다.[9]

그런데 이 논의는 피보험자의 남는 손해가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미보상손해'의 개념 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같은 맥락에서 어선보험의 경우에서도 어선소유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손해가 어선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적물에 관한 것임에도 이들 전부를 피보험자가 보험에서 보상받지 않은 '미보상손해'라고 전제한 후 위 차액설에 따라서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인 어선소유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이 내려졌다.[10]

---

8) 양승규, 앞의 책, 257면; 정찬형, 앞의 책, 704면; 박세민, 앞의 책, 521면; 장덕조, 앞의 책, 251면 등.

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10)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390, 1406, 3471 판결 등. 이 부산고등법원의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서 단순히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라고만 하고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기만 하면 목적물의 동일성까지는 요구되지 않기에 타당한 결론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피보험자와 보험자라는 지위는 보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 등에 발생한 손해, 즉 보험관계와 무관한 손해를 가지고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보험자 혹은 피보험자 중 누가 우선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는 오로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가 발생한 보험미가입 목적물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험자의 구상채권과 동순위의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상대선 소유자에게서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받으면 충분하다.

더욱이 어선보험의 경우 비록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 등 체결단위 중 일부만을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 선체와 기관 및 의장품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체결단위별로 가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어선보험약관 제3조)[11]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범위 문제도 체결단위별로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경우 위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보험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보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위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판결은, 피보험자가 어선의 선체와 기관만 어선보험에 가입하였고 충돌사고 후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증설된 부분의 가치와 함께 가입되지 않은 의장품 손해, 망실된 어구 손해, 불가동 손실을 구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6. 5. 26.자 2016다1028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1) 어선보험약관 제3조

① 보험계약은 어선을 구성하고 있는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및 개개의 의장품을 각각 체결단위로 합니다.

② 보험가입은 보험계약 체결단위 중 그 일부만을 따로 가입할 수 없으며, 선체와 기관 및 의장품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결 단위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안분한 것으로 합니다.

③ 보험가액의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결단위에 대하여는 가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위 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두었을 뿐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단한 바 있다.[12)]

우선, 이 대법원판결처럼 복수의 대상물에 대한 보험이 하나의 보험인지 아니면 별개의 보험인지가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범위를 좌우할 수 있는지 의문은 있지만, 이 대법원판결의 논리를 전제로 해도 어선보험에 있어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행되었어도 각각의 체결단위별로 보험가입금액이 책정됨이 어선보험약관에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 평가된 보험가입금액의 단순합계가 어선보험가입금액일 뿐이라고 이해하여 최소한 보험자 대위권 행사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체결단위가 기준이 된다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자 대위권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 대위권 행사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중략)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하여,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원심[13)]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로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14)15)]

---

1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2066 구상금.

14)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

위 대법원판결을 토대로 하면, 예시 사안과 같이 어선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장품 손해는 보험자 대위권 행사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우선하여 상대선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수협중앙회의 선체와 기관 손해에 대한 구상채권과 어선소유자의 의장품에 대한 배상채권은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대선 소유자로부터 배상받게 될 것이다.

4. 민간어업협정을 통한 해결의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수산회(이하 '한국수산회'라고 한다)는 일본 및 중국의 각 수산회 혹은 어업협회와 민간 차원에서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양 국적의 어선들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상호간 청구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 약정된 어업협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 수산회 혹은 어업협회가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 선체, 기관, 의장품 손해 정도에 국한하고 불가동 손실은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어선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를 함에 있어 상대선이 일본 어선 혹은 중국 어선인 경우 한국수산회를 통하여 구상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어선소유자 역시 충돌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국수산회를 통해 일본수산회 혹은 중국어업협회에 접촉하여 일본 혹은 중국 어선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불가동 손실이 제외되는 관계로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선체 손해에 국한하여 배상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여 어선소유자들은 일본 어선소유자 혹은 중국 어선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진행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16]

데, 丙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과 그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였다.

15) 동일한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15364 판결.

16)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선적 관리 등이 부실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선박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북한으로부터 임시선적증서와 임시조업허가를 받아 북한 영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나라 영해로 잘못 들어오거나 혹은

불가동 손실에 관한 입증의 곤란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해의 차이로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하기 위해서 불가동 손실을 배상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선소유자 입장에서는 배상 협의에 있어 어선보험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보다는 어선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닌 불가동 손실에 대한 배상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생계의 측면에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민간협정에 따른 것이지만, 불가동 손실을 배상 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위판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고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어선이 강재(鋼材)인지, FRP인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정하는 등 불가동 손실 산정방식을 객관화한다면 입증이나 입장 조율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가동 손실도 배상 협의의 대상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어선원보험의 경우

1. 어선원보험 대위 규정의 성격

어선원보험의 성격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지만, 산재보험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사보험에 있어서 발달해온 법적 구성을 공보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17]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3조[18]

EEZ에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나라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북한 발행의 임시선적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아예 중국 선적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17) 이흥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판례연구」 제14집, 부산판례연구회(2003. 2), 720면 등. 강창웅,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의 보상책임자의 구상권(대위권)",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1987), 654면과 김연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구상권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2015), 51면에서는 규정형식의 차이 등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대위규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나 상법상의 보험자 대위와 거의 같은 사상적 바탕 위에서 규정된 산재법 특유의 대위 법리로 보고 있다.

의 성격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선보험 구상권의 성격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682조 제1항과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3조의 각 대위할 권리의 주체와 대상,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내용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2. 보험급여와 대위청구권의 대응관계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협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하는 권리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인 부상당한 어선원의 권리 혹은 사망한 어선원의 유족의 권리를 대위한다. 어선원과 상대선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고 선박충돌이 전형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어선원이 상대선 소유자에 가지는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어선원에게 어선원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대위하는 청구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반적이다.

한편 수협중앙회의 대위권 혹은 구상권은 지급한 어선원보험금의 범위 내로 국한되고 어선원보험급여의 성격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어선원보험에 있어 부상 시에는 요양급여(「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19], 상병급여(「어선

---

18)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①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등에게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19)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 기관(이하 "지정의료 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乘務) 중[기항지(寄港地)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乘下船)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원재해보험법」 제24조)[20], 장해급여(「어선원재해보험법」 제25조)[21]가,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22]와 장례비(「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23]가 각 지급된다. 여기에서 요양급여는 손해배상의 치료비, 상병급여는 치료 종결 전까지의 일실수익,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이후의 일실수익, 장례비는 동일하게 장제비에, 유족급여는 일실수익에 각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보험자 대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응되는 손해의 항목에서 상대선 소유자가 지급할 금액이 수협중앙회가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4조(상병급여)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상병급여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상병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2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22)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못하게 되면, 수협중앙회는 그 항목에서 상대선 소유자가 지급할 범위에서만 구상회수를 할 수 있고, 넘는 부분은 다른 항목에서 회수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손해배상의 위자료는 오로지 부상당한 어선원 혹은 사망한 어선원의 유족에게 귀속될 뿐이고 대위를 할 수 없는 항목이다.

3. 적용 임금의 상이

어선원보험의 상병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들은 통상 어선소유자가 어선원보험 가입 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하지만, 어선원의 경우 고정급 외에 어획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는 생산수당 혹은 비율급(이른바 '짓가림제' 혹은 '보합제')에 의하여 근로 대가를 지급받는 등 임금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하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임금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24)25)]

한편 위에서 살펴보았듯 상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의 일실수익과 대응된다. 손해배상의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실제

---

24)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조(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8. 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25)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선원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원 최저임금과 함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이 함께 고시된다.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된다.[26] 이렇게 어선원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혹은 기준임금이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법원도 보험자 대위에 따른 구상소송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통상임금 등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월임금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요구한다.

어선원은 상선의 선원과 달리 고정급에 대하여 아예 약정을 하지 않거나 고정급을 약정해도 생산수당 내지 비율급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실제 받은 임금액을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선의 경우 승선 혹은 출항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상선 혹은 화물선과 달리 승무경력증명제도가 없어 승무경력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경력연수에 따라 임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상의 어업숙련직 임금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의 경우 전경력 평균임금액이 제시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 한국선원통계연보의 경우는 경력연수와는 상관없지만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계소득자료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선원의 근로형태나 임금지급형태가 지금과 같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어선원의 상황을 반영한 통계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한데, 어떤 기준, 어떤 요소로 세분화하고 조사할지는 여전히 숙제이다.

4. 신체감정의 문제

지급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에 대한 구상을 위해서는 그에 대응되는 일실수익 산정이 필요하다. 일실수익은 기본적으로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로 벌어들이

2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지 못하는 수입을 메꾸어주는 것이라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상 신체감정에 의하게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일실수익 산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라 상병급여와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익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범위 산정에 중요하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협중앙회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당시 통상 복수의 전의로부터 소견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내리고 여기에 정해진 일수를 곱하여 장해급여액이 정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장해등급은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정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심사와 진단을 거쳐서 장해등급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구상소송에서 다시 신체감정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내린 전문의에게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피재어선원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소견을 받기도 하지만, 신체감정과 장해등급 판정의 상이성과 그에 따른 판단의 부담감 등으로 사실조회처인 전문의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따라서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조회의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보험급여를 받아 사고로부터 시간적, 감정적으로 상당히 절연되어 있는 피재어선원으로 하여금 감정의를 방문하여 감정절차를 거치게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법원 감정에 준한 절차로 어선원보험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단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등급에 더하여 손해배상에 필요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도 함께 받도록 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런 판정결과에 대하여도 법원이나 상대선 소유자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를 대신해서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을 운영하는 자인 수협중앙회가 부풀린 판정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법원 감정에 준한 엄격한 절차에 따른 판정결과를 인정하는 선례가 쌓이면 그 이후 판정들에 대하여도 신빙성이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다른 경우의 문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

조에서는 그 유족의 범위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유족의 순위는 제30조를 각각 준용하고 있다.[27][28] 사망 당시 선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등 민법에 따른 상속인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권 정도만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고[29]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

27)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28)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선원법 시행령」 제30조(유족의 순위)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② 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 태아는 제29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④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30] 대법원의 입장을 토대로 하면 수협중앙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31] 그렇다고 사망한 어선원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대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에서 상대선 소유자는 실제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어선원보험이 유족의 생활보장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혹은 정책보험으로서 상속제도와 다르고 또 별도로 가입한 보험에서 지정된 수급권자가 보상받은 것이기에 이로 인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사실상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3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양되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 경우 부양되지 않아 유족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한 어선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2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30) 위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31) 한편 「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는 같이 부양되는 경우 같은 순위이므로 자녀 혹은 부모는 유족급여의 절반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수협중앙회는 절반의 유족급여를 받은 자녀 혹은 부모의 권리만을 대위하여 상대선 소유자에 청구하게 된다.

3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이고 일부는 아니었고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들이 산재보험가입자인 망인의 사용자와 그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배상청구를 한 것이다(실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진행한 일종의 기획소송이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공제와 상속의 순서에 대하여 기존의 '공제 후 상속설'의 입장에서 '상속 후 공제설'의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상속한 자는 어선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이자 어선원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인지, 유족을 부양하는지 등에 따라 어선원보험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어선원보험에 더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어선원보험의 구상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해볼 문제이다.

6. 대법원판결에 따른 구상의 문제

대법원은[33], "어선원 등의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수협중앙회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협중앙회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는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수협중앙회가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고 하여 수협중앙회의 어선원보험 구상범위를 산재보험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먼저 수협중앙회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하는 권리는 어선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권리이다. 이렇게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마당에 어선소유자의 과실비율로 대위권(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위'라는 것이 원래 권리를 가지는 자의 위치에 대신 들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수협중앙회는 어선소유자가 아닌 수급권자인 어선원 혹은 그 유족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어선원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어선소유자이고 어선원보험이 어선소유자가 어

3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판결.

선원에게 부담하는 재해보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재해보상에 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할 때, 대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선원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권리가 어선소유자로 이전되고 그 권리가 다시 수협중앙회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어선소유자의 권리(보험급여를 통하여 어선소유자가 이전받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정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2) 다음으로 위 대법원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재재구상에 대하여는 학설상 직접적인 논의는 없으나, 산재보험구상과 관련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나뉜다.[34] 대립하는 견해를 어선원보험에 맞추어 정리하면, ① 긍정하는 견해는 어선원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가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수협중앙회에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와 수협중앙회에 재재구상을 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5조를 유추적용의 근거로 하는 견해가 추가될 수 있다. ② 부정하는 견해는 재재구상의 경우는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미리'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선소유자와 상대선 소유자라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지급이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5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일단 수협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제3자에 의하여 구상당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후에 지급한 점 외에는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5조의 취지가 자신이 가입한 어선원보험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배상을 한 어선소유자의 보험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재재구상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다만 부정하는 견해가 지적하듯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5조의 문언상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또 준용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5조의 취지에 맞추어 대법원판결과 같이 유추적용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

34) 상세한 논의는, 이주현,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법원도서관(2002.12.), 398-401면; 이흥구, 앞의 논문, 730-733면; 김종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범위, 「판례연구」 제1집, 부산판례연구회(1991), 277면.

3) 마지막으로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수협중앙회의 구상범위는 피해자인 어선원이 배상받을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때 피해자인 선장 등 항해사의 과실을 어선소유자의 과실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선박충돌사고는 선장 등 항해사의 항해상 혹은 조선상의 과실로 발생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선장 등 항해사의 과실은 어선소유자의 그것과 같이 취급된다. 만약 이렇게 손해액 산정에 선장 등 항해사 과실이 반영된 후 다시 어선소유자 부담액을 산정함에 동일한 내용의 과실을 어선소유자의 과실로 보게 되면 동일한 과실이 두 번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조선상의 과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안전조끼 미착용 등 다른 유형의 과실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은 듯하다. 육상에서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혹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의 분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육지에서 이격되어 실제 어선소유자의 관리가 미치지 않아 선장 등이 실질적이고 총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해상선박사고에서는 그러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해상사고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한편 선장 등 항해사 외의 다른 어선원의 경우는 육상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어선소유자의 과실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수협중앙회의 어선원보험 구상 범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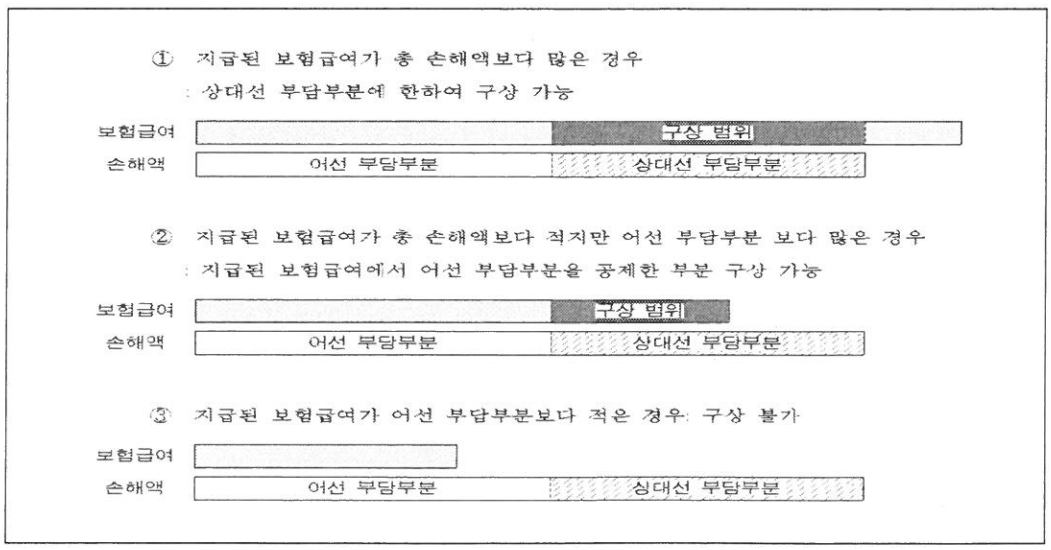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관련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2조에서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수협중앙회에서 전액이 지급되고 제23조에서는 승무 중 직무외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본인부담 부분(제1항) 혹은 아예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한다.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어선원보험이 전부 보상을 하고 승무 중 직무외 재해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어선원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상 재해의 경우는 어선원보험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만약 국민건강보험에서 먼저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보험에 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규정을 토대로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35]

문제는 승무 중 직무외 재해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선박충돌사고로 어선원이 부상을 입었고 그것이 승무 중 직무외 재해로 인정된다면,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는 어선원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협중앙회 모두가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이다.

우선 대법원은 과거에는[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라고 하여 '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 있었으나[37], 최근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35) 참고로 육상근로자에 관한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오로지 업무상 재해만 그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선원법」은 직무수행 중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재해(승무 중 직무외 재해) 두 가지를 그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선원법」과 동일하게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외 재해 두 가지를 어선원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3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37) 과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보험으로 책임보험적 성격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음과 같이 '공제 후 상계설'로 그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대법원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수급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각 구상권 사이의 우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지만, '공제 후 상계설'의 취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피보험자인 피해자든 상대선 소유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여 배상 혹은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그와 구조가 다른 국민건강보험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관련하여 대법원이 차액설로 입장이 변경되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동일하게 차액설의 입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즉 피보험자가 먼저 미보상손해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회수를 해야 한다는 견해(박성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판결에 대한 비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2020), 124-126면)와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을 통일적, 체계적 해석을 한다면 「상법」 제681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보비율에 따라 각자의 분배비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상대설, 즉 상대선 소유자 부담액에 대한 각 부담금의 손해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노태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2015), 124-125면)가 있었다.

구상하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므로, 위에서 상정한 승무 중 직무외 재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수협중앙회가 치료비(요양급여)를 분담한 경우 각각의 분담액의 비율로 상대선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위에서 살펴보았듯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사회보험성과 정책보험성, 그 보상의 대상과 범위, 법률 규정의 방식 등에 의하여 일반 보험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어선 및 어선원보험자인 수협중앙회의 상대선 소유자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경우는 산재보험 구조와 유사하여 산재보험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도 아직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과 육상근로와 다른 해상근로의 특성을 떠올리면 어선원보험에 대하여 산재보험법리 적용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법원 선례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에서는 위에서 살핀 문제들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법론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세민, 「보험법」(제5판), 서울 : 박영사, 2019.

양승규, 「보험법」(제5판), 서울 : 법문사, 2004.

장덕조, 「보험법」, 서울 : 법문사, 2011.

정찬형, 「상법강의(하)」, 서울 : 박영사, 2019.

[학술논문]

강창웅,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의 보상책임자의 구상권(대위권)",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1987).

김연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구상권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2015).

김종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범위", 「판례연구」 제1집, 부산판례연구회(1991).

노태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2015).

박성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에 대한 비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2020).

이주현,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40호, 법원도서관(2002).

이흥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판례연구」 제14집, 부산판례연구회(2003).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1536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390, 1406, 3471 판결 및 대법원 2016. 5. 26.자 2016다1028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논문접수일] 2021년 06월 11일
[논문심사일] 2021년 07월 07일
[논문채택일] 2021년 07월 20일